

**1. 블라인드 채용 의의**

-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, 가족관계, 학력, 외모 등의 편견 요인은 제외하고 실력(직무능력)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
- '편견이 개입되는 요소'란, 법령 또는 사회적으로 차별로 인식하는 요인이 직무 수행상 필요 조건이 아닌 경우를 말함

**2.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**

- 입사지원서 작성 시
  - 교육·경험·경력사항을 작성할 때 출신학교를 기재하거나 구체적인 동아리명, 건물명칭, 행정조교·근로장학생 근무이력 등 출신학교를 직·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
  - 직무기술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름, 학력, 신체, 종교, 가족, 출신지역 등을 기재하여 본인임을 직·간접적으로 드러내거나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드러내는 경우
- 면접전형 시
  - 면접위원의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출신지, 가족관계, 학력, 신체 등의 편견 요인을 발언하는 경우

**3. 블라인드 채용 위반 시 처리절차**

- 개인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또는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·발언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**4. 참고사항(「화성시인재육성재단 채용규정 운영내규」 별표2)**

**서류전형 심사기준(제4조제2항 관련)**

전형단계	세부사항	선발배수
서류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기소개서 작성 불량 등 불성실 기재자, <b>블라인드 채용 위반자</b> 및 자격요건 미충족자 제외 전원선발</li> <li>- 자기소개서 또는 직무수행계획서 공란</li> <li>- 한 항목에 100자 미만 작성</li> <li>- 질문과 무관한 내용 작성</li> <li>- 동일한 문장 반복</li> <li>- <b>출신학교·출신지·가족사항 등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기재 등</b></li> </ul>	적·부심사